[JDI 제13회 제주미래포럼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제주사회의 대응전략 (Ⅱ)]

100세 시대 도래와 제주의 고용 · 교육분야 변화

토 론 문

제주발전연구원
Jeju Development Institute

노인교육과 일자리

강 수 영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1) 노인교육의 패러다임 재정립 필요 - 복지영역이 아닌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접근

노년기의 삶에 있어서 단순히 일자리가 가져다주는 경제적 의미를 넘을 수 있는 교육의 방향과 목표설정이 필요하다. 현재는 노인교육이 경로당(노인회관), 복지관 중심으로 교양과정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2) 노인교육, 일자리 요구조사 선행

노인들은 생활수준별, 지역별 ,학력, 성별 등 다양한 변인에 따른 요구도가 다르다. 현재 노인교육 현황파악과 교육대상자들에 대한 요구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퇴직 후, 또는 60세 이후의 현업에 종사하는 노인일자리 현황파악과 노인일자리에 대한 요구조사 필요(직종, 임금수준, 기업체 및 기관 수요 포함 등)

3) 노인일자리와 연계될 수 있는 직업교육 및 직종연구 필요

노인일자리가 많지도 않으며 특히 제주지역의 경우 직종이 한정되어 있음. 제주지역에서 노인일자리로 새롭게 개척할만한 직종에 대한 연구와 직종개발 후 이에 대한 교육지원이 필요. 이와 더불어 소호창업 등 평생직업으로 가질 수 있는 창업지원 필요

4) 실버인재뱅크를 통한 노인인력활용 방안 모색

다양한 직종의 퇴직자들의 전문성 사회 재환원과 인력 활용 필요, 실버인재뱅크와 같은 인력풀이 있어야 함

5) 노인교육기관에 대한 예산지원과 전달체계 개선

- 각 교육기관이나 직업훈련시설들의 특성을 살린 전문,집중교육 활성화
- 교육중복을 피하고 기초/심화 교육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 노인교육에 대한 지원 미비한 수준, 이에 대한 예산지원
- 노인교육의 전달체계 개선

6) 가칭 제주평생교육진흥원 설치시 목표와 기능이 중요

- 노인교육에 관한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컨트럴타워 역할
- 어떤 기능을 얼마만큼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지역사회 합의 필요

노인고용정책 및
제주도 노인일자리사업 개선과제

박 경 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부연구위원)

<100세 시대 도래와 제주 노인고용의 대응 전략과 과제> 주제로 고승한 박사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은 우리나라 고령자 고용정책의 전반적인 문제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유익하고 총체적인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좋은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의 정책적 흐름을 지역의 문제와 연계해서 노인고용에 대한 조례제정, 고용(일자리)-일-교육 서비스를 통합하는 제주노인고용종합지원센터 설립·운영, 노인의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직업능력 개발 프로그램 다양화, 지역의 노인고용관련 종합계획 수립, 노·청 연계 사회적 기업 운영, 노인인력의 DB 구축 등 다양한 대안들을 끌어내고 있는 노력이 돋보인다. 발표자가 보여주고 있듯이 지역 차원에서는 노동부, 복지부 정책의 이원화 된 접근을 벗어나 고령자 고용정책과 정부재정 일자리 정책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노력이 더욱 현실적이면서 바람직 해 보인다.

필자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정책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중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이 필요한 2가지 문제, 즉 고령자 고용정책의 법적 실효성 문제와 노인일자리사업의 욕구와 사업내용의 부정합 문제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제주시의 노인일자리사업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발표자와 공유해보고자 한다.

1. 고령자 고용정책의 법적 실효성 문제

<표1>에 정리되었듯이 우리나라 고령자 고용정책은 연령차별금지, 고용할당제, 보조금 고용, 직업능력개발, 우선권 설정, 보호고용을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체계에서 고령자의 고용보장제도는 강행성, 벌칙조항, 국가의 재정부담을 기준으로 평가해 보면 법적 실효성과 제도적 효과는 매우 낮다(<표 2> 참조). 연령차별금지, 정년제, 기준고용률 적용, 장려금 지원제도, 임금피크제도, 직업훈련, 노인생업지원, 우선고용직종 선정 등의 고령자 고용촉진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면, 임의규정으로 명시되었거나 구체적인 조치가 불분명한 현행 법 규정 내용을 국가 및 사업주의 책임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대폭적인 변화를 기하여 이러한 제도들이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실제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표 1〉 우리나라 고용정책 구분과 법적 근거

고용정책 구분		법적 근거 및 내용
연령차별금지	연령을 기준으로 한 인식이 고령자의 고용을 가로막는 장애요소가 된다는 전제로 이를 금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 4-① ► 연령차별금지, 정년제
고용할당제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주가 고용하여야 할 근로자 비율을 제시하여 일정 수준 이상으로 고령자 고용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제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 12조, 시행령 제 10조 ► 기준고용률
보조금 고용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용주에게 고용비용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21조 ►사업주를 지원하는 장려금 , 임금보전수당
직업능력개발	직업능력개발 제도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고령자에게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제공하는 의무를 지거나 사업주에게 필요한 직업훈련 비용을 지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6조, '고용정책기본법' 제 8조 ► 고령자 뉴스타트 프로그램
우선권 설정	비고령층에 비해 고령집단이 고용상 유리하도록 특혜를 제공	'노인복지법' 25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7조 ► 노인생업지원제도, 우선고용직종선정제도
보호고용	특수작업장(special workshop), 고립작업장(enclaves), 사회적 기업(social firm)과 같이 보호된 환경에서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	사회적 기업육성법 제 2조, 노인복지법 23조 ► 사회적 기업, 노인일자리사업

〈표2〉 고령자 고용정책의 법적 실효성 측정

	연령차별 금지	고용 할당제	보조금고용	직업능력개발	우선권설정	보호고용
강행법규	· 연령차별금지: 강행 · 정년제: 임의	임의	· 고령자고용촉진 장려금: 임의 · 임금보전수당: 임의	· 고령자고용촉진 -국가책임: 강행 -사업주책임: 임의	· 생업지원: 강행 · 우선고용직종 -공공기관: 강행 -민간기관: 임의	· 사회적기업: 강행 · 사회적일자리: 임의
벌칙조항	있음	있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국가재정 부담	없음	없음	있음	있음	없음	있음

2. 노인일자리 사업의 부정합 문제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가운데 노인을 위한 일자리 정책으로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은 욕구와 사업내용의 부정합성 해결, 사업내용의 다양성 문제 해결을 통해 일자리의 질적 제고를 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주어져 있다.

첫째, 참여자의 욕구나 특성이 사업내용과 제대로 결합되어야 한다. 참여노인의 삶의 질을 낮추는 가장 중요한 이슈는 빈곤문제이다. 이소정 외(2011)에 따르면,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참여노인의 빈곤율 수준은 56.4%에 이를 만큼 경제적 문제가 심각한 상태에 있다. 그리고 이들 중 과반수 이상은(59%)는 생계비 마련을 위해서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다.[1] 그러나 참여자의 현재 근로조건과 희망하는 근로조건은 경제적 욕구를 충족하기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참여기간이 일자리의 지속성 혹은 안정성을 보장하기에 미흡한 수준에 있다. 모든 유형을 포함한 참여자들의 평균 급여수준은 월 20만원 정도이며, 급여에 대한 만족수준은 24.8%에 불과할 정도로 낮다. 반면에 현재 희망하는 급여수준은 월평균 약 65만원 수준으로 실제 급여액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근무일수 및 근로시간 역시 희망하는 내용과 차이를 보이는데, 희망하는 근로일수는 51.9%가 평일 5일, 37.7%가 1일 1~4 시간 시간제 근로를 선호하지만 현재 일자리사업 참여내용은 62.4%가 주 3일 근로, 주당 평균 13.6시간을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원하는 근로조건의 일을 수행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 있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은 일자리의 안정성 및 지속성 측면에서도 제약조건이 크다. 공공분야 일자리(공익형, 복지형, 교육형)는 7개월의 참여를 전제로 한 한시적 일자리이며, 민간분야(시장형, 인력파견형)는 연중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다. 참여개월수를 평균값으로 산출해 보면 전체 참여 개월수는 5.9개월이며, 유형별로 보아도 6개월 내외의 참여기간을 나타내고 있어 충분하게 일할 기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민간분야 일자리 영역도 참여의 지속성 측면에서 보면 다른 유형과 비교해 별다른 특이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시장형 6.4개월, 인력파견형 5.8개월 정도 밖에 근로기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질적 측면에서 공공분야 일자리 보다 우월한 위상을 가지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평균적인 참여연수를 분석해 보면 약 2.5년 정도이며, 이 결과를 통해 평균적으로 2회 정도를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사업유형별로 보면 민간분야 일자리가 더 충분한 노동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표3〉 사업유형별 참여개월, 참여연수

구 분	사례수	참여개월	참여연수
공 익 형	700	5.7	2.4
교 육 형	200	6.0	3.2
복 지 형	300	6.0	2.7
시 장 형	150	6.4	2.6
인 력 파 견 형	150	5.9	1.8
합 계	1500	5.9	2.5

* 자료 : 2010년 참여노인 실태조사

1) 2010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동기는 생계비 마련 59% 용돈마련 18.6%, 사회참여 6%, 건강유지 7.4%, 관계형성 및 소외감 해소 0.4%, 자아실현 2.5%, 기타 6.1%였다.

둘째, 노인일자리사업이 소득보전 및 사회참여와 같은 다차원적인 목표를 성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내용이 그 만큼 다양해져야만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은 참여자들이 일부 사업에 편중된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공공분야 일자리에서 공익형 사업은 '지역사회 환경개선보호사업'에 54.5%, 교육형은 '1-3세대 강사파견사업'에 47%, 복지형은 '노노케어(독거노인 돌봄지원사업 30.6%, 거동불편노인 돌봄지원사업 24.5%, 생활시설이용자 돌봄지원사업 6.6%)에 58.9% 인원이 배치되었다. 민간분야 일자리에서 시장형 사업은 영세한 소규모의 '공동작업장운영사업' 30.6%에 이르고 시장영역에서 경쟁력이 있는 업종선정이 용이치 않은 '식품제조 및 판매사업'이 19.1%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인력파견형은 '지속통합사업'에 54% 정도가 분포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4〉 2011년 노인일자리 세부유형별 실적 및 참여인원

(단위: 개, %, 명)

		사업단수		창출실적			참여노인수	
		사업단수	비율	수행 일자리수	비율	사업단별 평균 일자리수	참여 노인 수	비율
공익형	전 체	1,586	100.0	126,894	100.0	80.0	154,294	100.0
	아동안전보호사업	340	21.4	18,641	14.7	54.8	21,659	14.0
	초등학교 급식도우미사업	124	7.8	10,436	8.2	84.2	11,805	7.7
	지역사회 환경개선보호사업	548	34.6	76,362	60.2	139.3	95,945	62.2
	기타(10개 세부사업포함)	574	36.3	21.456	17	36.1	24,885	16.2
교육형	전 체	668	100.0	17,480	100.0	26.2	18,498	100.0
	1-3세대 강사파견사업	316	47.3	9,563	54.7	30.3	9,827	53.1
	노-노교육 강사파견사업	156	23.4	3,295	18.9	21.1	3,408	18.4
	기타(7개 세부사업포함)	196	29.2	4622	26.5	151.6	5263	28.5
복지형	전 체	1,239	100.0	47,302	100.0	38.2	51,650	100.0
	거동불편노인 돌봄지원사업	614	49.6	28,554	60.4	46.5	30,648	59.3
	생활시설이용자 돌봄지원사업	136	11.0	5,734	12.1	42.2	6,315	12.2
	기타(8개 세부사업포함)	489	39.5	13,014	27.4	208.9	14,687	28.4

3. 제주도 노인일자리사업의 다양성 부족

2011년 기준으로 노인일자리 실적을 보면 전체 참여인원 24만 6천 명 중에서, 1.1% 인원인 2,685명에게 일자리 참여의 기회가 주어져 16개 시도에서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다.[2] 사업유형별로 공익형 62%, 교육형 9%, 복지형 21%, 인력파견형 4%, 시장형 4%로 92% 수준이 노인에게 사회참여 욕구에 부응하는 일자리로서 성격이 강한 공공분야 일자리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표 5> 참고). 이는 소득보전에 초점을 둘 수 있는 민간분야 일자리가 최소화되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만약 제주도 역시 다른 지역에서 발견되듯이 생계수단의 욕구가 높은 노인이 공공분야 일자리에 집중되어 있다거나 민간분야 일자리에 속하더라도 소득창출 가능성이 낮은 사업에 있는 인원이 보편적일 경우 일자리의 질적 제고가 어렵게 되는 구조적 문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소득창출형 일자리사업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시장형 사업의 급여수준이 <표6>에 제시되어 있는데, 시장형 사업의 1인당 월평균 보수수준은 22만 8천원 정도로 전국 평균 수준보다 급여수준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어 '괜찮은 일자리'라는 측면에서 질적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의 다양성 측면에서도 제약 조건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전체 유형(중분류) 중에서 공익형 사업인 '지역사회관리지원사업'(환경개선보호 사업)이 53.4%를 차지하고 있으며, 복지형인 '소외계층돌봄지원사업'이 18.4%를 구성하고 있을 만큼 특정 사업유형에 쏠림 현상이 두드러져있다. 민간분야 일자리사업에서 시장형, 인력파견형 사업이 특정한 일부 사업만을 수행하고 있는 정도로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 있다(표 7참조).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려면 제주도 지역 내 노인일자리사업의 욕구와 사업내용의 불일치 문제를 적극적으로 재조명하고 노인이 다양한 욕구에 기반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의 다각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업의 다각화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개발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다. 타 지역에 이미 활성화 되어 있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그 가운데 지역 경제 및 사회 서비스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도입하는 노력들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2) 제주도의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2000년도에 이미 8.2%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2010년도에는 전체 인구 중 12.3%에 이르러 다른 지역과 비교해 비교적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2030년이 되면 그 비중이 현 수준의 2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도 기준으로 서귀포시가 전체 인구중 16.2%로 제주시 11.3%보다 4.9% 정도 높게 분포하고 있다.

〈표 5〉 2011년 시도별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실적(사업유형별, 시도별)

(기준 : 2011.12.31, 단위 : 개·자리·명)

구분	소계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인력파견형			시장형			창업모델형		
	배정 일자리 사업량	수행 일자리 사업량	참여 인원 (누적)	배정 일자리 사업량	수행 일자리 사업량	참여 인원 (누적)	배정 일자리 사업량	수행 일자리 사업량	참여 인원 (누적)	배정 일자리 사업량	수행 일자리 사업량	참여 인원 (누적)	배정 일자리 사업량	수행 일자리 사업량	참여 인원 (누적)	배정 일자리 사업량	수행 일자리 사업량	참여 인원 (누적)	배정 일자리 사업량	수행 일자리 사업량	참여 인원 (누적)
합계	**218,063**	**220,346**	**246,782**	**130,033**	**129,066**	**150,033**	**20,262**	**20,317**	**21,349**	**45,544**	**45,097**	**49,534**	**9,714**	**10,380**	**10,380**	**11,947**	**14,967**	**14,967**	**563**	**519**	**519**
서울	33,051 (15.2)	32,262 (14.6)	35,578 (14.4)	22,990 (17.7)	22,483 (17.4)	24,811 (16.5)	2,300 (11.4)	2,217 (10.9)	2,353 (11.0)	5,881 (12.9)	5,595 (12.4)	6,447 (13.0)	920 (9.5)	780 (7.5)	780 (7.5)	948 (7.9)	1,172 (7.8)	1,172 (7.8)	12 (2.1)	15 (2.9)	15 (2.9)
부산	14,151 (6.5)	14,601 (6.6)	15,882 (6.4)	6,417 (4.9)	6,310 (4.9)	7,130 (4.8)	1,645 (8.1)	1,661 (8.2)	1,728 (8.1)	3,890 (8.5)	3,905 (8.7)	4,299 (8.7)	800 (8.2)	975 (9.4)	975 (9.4)	1,346 (11.3)	1,719 (11.5)	1,719 (11.5)	53 (9.4)	31 (6.0)	31 (6.0)
대구	10,957 (5.0)	11,304 (5.1)	12,179 (4.9)	6,449 (5.0)	6,521 (5.1)	7,205 (4.8)	1,106 (5.5)	1,101 (5.4)	1,146 (5.4)	2,195 (4.8)	2,199 (4.9)	2,345 (4.7)	476 (4.9)	582 (5.6)	582 (5.6)	653 (5.5)	842 (5.6)	842 (5.6)	78 (13.9)	59 (11.4)	59 (11.4)
인천	12,577 (5.8)	13,140 (6.0)	14,100 (5.7)	6,808 (5.2)	6,909 (5.4)	7,689 (5.1)	955 (4.7)	960 (4.7)	973 (4.6)	2,923 (6.4)	2,846 (6.3)	3,013 (6.1)	986 (10.2)	1,143 (11.0)	1,143 (11.0)	875 (7.3)	1,266 (8.5)	1,266 (8.5)	30 (5.3)	16 (3.1)	16 (3.1)
광주	5,825 (2.7)	5,968 (2.7)	6,615 (2.7)	2,931 (2.3)	2,962 (2.3)	3,450 (2.3)	596 (2.9)	601 (3.0)	641 (3.0)	1,360 (3.0)	1,364 (3.0)	1,483 (3.0)	434 (4.5)	453 (4.4)	453 (4.4)	476 (4.0)	561 (3.7)	561 (3.7)	28 (5.0)	27 (5.2)	27 (5.2)
대전	7,817 (3.6)	7,886 (3.6)	9,262 (3.8)	5,325 (4.1)	5,258 (4.1)	6,511 (4.3)	621 (3.1)	620 (3.1)	649 (3.0)	1,114 (2.4)	1,088 (2.4)	1,182 (2.4)	271 (2.8)	268 (2.6)	268 (2.6)	449 (3.8)	627 (4.2)	627 (4.2)	37 (6.6)	25 (4.8)	25 (4.8)
울산	4,251 (1.9)	4,347 (2.0)	4,575 (1.9)	2,111 (1.6)	2,117 (1.6)	2,318 (1.5)	641 (3.2)	641 (3.2)	644 (3.0)	1,113 (2.4)	1,125 (2.5)	1,149 (2.3)	201 (2.1)	248 (2.4)	248 (2.4)	173 (1.4)	211 (1.4)	211 (1.4)	12 (2.1)	5 (1.0)	5 (1.0)
경기	29,423 (13.5)	29,604 (13.4)	32,762 (13.3)	14,946 (11.5)	14,637 (11.3)	17,097 (11.4)	4,368 (21.6)	4,439 (21.8)	4,527 (21.2)	5,875 (12.9)	5,837 (12.9)	6,447 (13.0)	2,437 (25.1)	2,446 (23.6)	2,446 (23.6)	1,755 (14.7)	2,199 (14.7)	2,199 (14.7)	42 (7.5)	46 (8.9)	46 (8.9)
강원	12,122 (5.6)	12,248 (5.6)	15,127 (6.1)	7,559 (5.8)	7,424 (5.8)	9,976 (6.6)	816 (4.0)	830 (4.1)	872 (4.1)	2,185 (4.8)	2,194 (4.9)	2,479 (5.0)	299 (3.1)	289 (2.8)	289 (2.8)	1,238 (10.4)	1,488 (9.9)	1,488 (9.9)	25 (4.4)	23 (4.4)	23 (4.4)
충북	8,434 (3.9)	8,481 (3.8)	9,472 (3.8)	4,287 (3.3)	4,133 (3.2)	4,667 (3.1)	897 (4.4)	876 (4.3)	965 (4.5)	2,185 (4.8)	2,183 (4.8)	2,551 (5.1)	334 (3.4)	420 (4.0)	420 (4.0)	699 (5.9)	812 (5.4)	812 (5.4)	32 (5.7)	57 (11.0)	57 (11.0)
충남	11,704 (5.4)	11,784 (5.3)	13,119 (5.3)	7,838 (6.0)	7,832 (6.1)	8,553 (5.7)	1,120 (5.5)	1,127 (5.5)	1,403 (6.6)	1,912 (4.2)	1,903 (4.2)	2,241 (4.5)	255 (2.6)	278 (2.7)	278 (2.7)	540 (4.5)	608 (4.1)	608 (4.1)	39 (6.9)	36 (6.9)	36 (6.9)
전북	16,457 (7.5)	16,743 (7.6)	19,300 (7.8)	10,076 (7.7)	10,043 (7.8)	12,298 (8.2)	1,481 (7.3)	1,486 (7.3)	1,530 (7.2)	3,605 (7.9)	3,617 (8.0)	3,875 (7.8)	520 (5.4)	569 (5.5)	569 (5.5)	702 (5.9)	950 (6.3)	950 (6.3)	73 (13.0)	78 (15.0)	78 (15.0)
전남	17,070 (7.8)	16,914 (7.7)	20,845 (8.4)	10,730 (8.3)	10,701 (8.3)	14,178 (9.4)	1,285 (6.3)	1,293 (6.4)	1,363 (6.4)	4,047 (8.9)	3,974 (8.8)	4,358 (8.8)	419 (4.3)	303 (2.9)	303 (2.9)	564 (4.7)	614 (4.1)	614 (4.1)	25 (4.4)	29 (5.6)	29 (5.6)
경북	16,907 (7.8)	17,419 (7.9)	19,007 (7.7)	11,097 (8.5)	11,305 (8.8)	12,561 (8.4)	1,001 (4.9)	1,021 (5.0)	1,068 (5.0)	3,218 (7.1)	3,225 (7.2)	3,510 (7.1)	645 (6.6)	681 (6.6)	681 (6.6)	910 (7.6)	1,149 (7.7)	1,149 (7.7)	36 (6.4)	38 (7.3)	38 (7.3)
경남	14,774 (6.8)	15,091 (6.8)	16,274 (6.6)	8,874 (6.8)	8,858 (6.9)	9,936 (6.6)	1,178 (5.8)	1,193 (5.9)	1,224 (5.7)	3,525 (7.7)	3,525 (7.8)	3,599 (7.3)	637 (6.6)	829 (8.0)	829 (8.0)	519 (4.3)	652 (4.4)	652 (4.4)	41 (7.3)	34 (6.6)	34 (6.6)
제주	2,543 (1.2)	2,554 (1.2)	2,685 (1.1)	1,595 (1.2)	1,573 (1.2)	1,653 (1.1)	252 (1.2)	251 (1.2)	263 (1.2)	516 (1.1)	517 (1.1)	556 (1.1)	80 (0.8)	116 (1.1)	116 (1.1)	100 (0.8)	97 (0.6)	97 (0.6)	0 (0.0)	0 (0.0)	0 (0.0)

자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사업 정보시스템 Database, 2011.

〈표6〉 2011년 시·도별 시장형사업 추진현황

(기준 : 2011.12.31, 단위 : 명, 개, 자리, 개월)

구분	사업단(개)	'10년	배정 일자리 사업량(자리)	'10년	참여 인원(누적,A)	'10년	보수총액(원)(1~12월,B)	'10년	총 참여 개월(C)	'10년	1인당 월평균 보수(원)(B/C)	'10년	1인당 평균 참여 기간(개월)(C/A)	'10년
합계	**682**	**664**	**11,947**	**12,616**	**14,967**	**15,373**	**26,891,023,371**	**24,527,655,669**	**108,859**	**109,156**	**247,026**	**224,703**	**7.3**	**7.1**
서울	53	55	948	988	1,172	1,207	2,481,397,222	2,337,348,965	9,209	8,733	269,453	267,646	7.9	7.2
부산	54	61	1,346	1,427	1,719	1,786	2,895,268,192	2,654,013,550	11,927	12,210	242,749	217,364	6.9	6.8
대구	36	35	653	800	842	1,008	1,987,314,492	1,798,557,846	7,067	7,192	281,210	250,078	8.4	7.1
인천	29	24	875	834	1,266	1,186	2,373,717,962	2,322,406,709	9,117	9,200	260,362	252,436	7.2	7.8
광주	24	28	476	574	561	653	799,849,128	898,793,653	4,183	4,939	191,214	181,979	7.5	7.6
대전	29	29	449	520	627	727	1,469,430,207	1,026,569,857	4,422	3,921	332,300	261,813	7.1	5.4
울산	10	10	173	180	211	202	744,760,539	557,850,082	1,735	1,462	429,257	381,566	8.2	7.2
경기	128	116	1,755	1,814	2,199	2,148	3,523,411,749	3,099,518,634	15,685	15,384	224,636	201,477	7.1	7.2
강원	48	40	1,238	1,000	1,488	1,087	1,884,382,643	1,495,998,911	9,126	7,928	206,485	188,698	6.1	7.3
충북	40	42	699	840	812	1,024	1,687,803,924	1,673,233,991	6,421	7,538	262,857	221,973	7.9	7.4
충남	33	43	540	686	608	771	989,685,749	1,176,593,712	4,650	5,713	212,836	205,950	7.6	7.4
전북	48	51	702	877	950	1,215	1,511,786,396	1,702,374,731	6,990	8,203	216,278	207,531	7.4	6.8
전남	59	38	564	480	614	558	876,091,897	777,346,921	4,496	4,016	194,860	193,562	7.3	7.2
경북	50	49	910	926	1,149	1,042	2,167,494,811	1,697,512,635	7,943	6,914	272,881	245,518	6.9	6.6
경남	34	37	519	600	652	683	1,341,463,560	1,246,010,322	5,201	5,243	257,924	237,652	8.0	7.7
제주	7	6	100	70	97	76	157,164,900	63,525,150	687	560	228,770	113,438	7.1	7.4

〈표 7〉 제주도 노인일자리사업 현황(창출실적, 참여노인수)

대유형	중유형	사업단수	창출실적		참여노인수	
		사업단	배정일자리사업량	비율	참여 인원 (누적)	비율
		32	**2,543**	100	**2,685**	100
공익형	미래세대지원사업	-	-	-	-	-
	자원회수 및 재활용사업	-	-	-	-	-
	녹색환경 관리지원사업	-	-	-	-	-
	지역사회관리지원사업	2	1402	55.1%	1433	53.4%
	공공질서계도지원사업	1	120	4.7%	132	4.9%
	공중이용시설 관리지원사업	1	60	2.4%	78	2.9%
	기타 지역특화사업	1	13	0.5%	10	0.4%
교육형	학습지도강사파견사업	3	137	5.4%	139	5.2%
	전문해설	2	110	4.3%	118	4.4%
	기타지역특화서업	2	5	0.2%	6	0.2%
복지형	소외계층돌봄지원사업	9	456	17.9%	493	18.4%
	가족친화지원사업	-	-	-	-	-
	주거환경개선지원사업	1	20	0.8%	20	0.7%
	문화복지지원사업	1	40	1.6%	43	1.6%
	기타사업					
시장형	일자리지속형	2	44	1.7%	49	1.8%
	수익창출형	5	56	2.2%	48	1.8%
인력파견형	일회성파견사업	2	80	3.1%	116	4.3%
	지속파견사업	-	-	-	-	-

주 1) 배정일자리 사업량: 사업계획서상 인건비 총액/140만원, (140만원 = 1인×20만원×7개월)

누적참여자 사업량:참여기간과 상관없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노인 전체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사업 정보시스템 Database, 2011.

100세 시대 도래와
제주노인고용의 대응 전략과 과제 토론문

박 재 천
(서귀포시니어클럽 관장)

▢ 노인일자리사업이 정부의 정책으로 공식 시행된 것은 2004년부터이지만 2001년 시범사업(5개소)을 시작으로 지역사회시니어클럽(Community Seniors Club), 노인인력운영지원기관, 시니어클럽 등으로 명칭 변경의 과정을 거치면서 2012년 현재 까지 일자리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러한 추진경과속에서 노인고용, 노인일자리 혹은 노인의 사회 참여라는 용어가 시대적 화두가 되었음.

▢ 고승한 박사의 '100세 시대 도래와 제주 노인 고용의 대응 전략과 과제'는 노인을 둘러싼 일반적인 환경변화, 노동시장의 변화, 정부의 노인 고용정책 방향과 개선사항, 제주지역 노인인구의 특성, 제주지역 노인고용 관련 문제사항에 대한 진단과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전략을 제시하였다.
노인고용에 대한 문제 진단으로 노인고용 촉진 및 지원 전문 수행기관간 협력부족, 노인인력의 노동시장 구조분석 미흡, 노인일자리 발굴 및 개발 프로그램 부족,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에 의한 소득보장 미흡, 민간부문에서 노인고용 지원의 적극성 부족 등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노인고용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로 노인고용통합관리 지원체계 구축,노인취업역량 제고, 향토자원 활용한 노인일자리 창출 확산, 노인인력 DB구축, 제주지역의 고령친화도시 조성 추진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하였다.

▢ 현장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무자의 한사람으로써 고승한 박사님의 발표에 대해 많은 부분을 공감합니다.
특히 노인고용촉진 및 전문 수행기관 간 연계·협력이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하면서 부족하지만 제주지역의 노인고용에 대해 제 개인적인 견해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노인고용촉진 기관별 연계 부족에 따른 업무의 중복이 노인고용과 일자리사업의 시너지효과를 높이는데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노인 고용촉진 및 전문 수행기관이 함께 참여 하는 토의(토론)의 장이 정기적으로 마련이 되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 다함께 논의가 되고, 문제점들을 해소시켜 나간다면 노인고용에 대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기관에서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행정에서부터 이러한 부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겠으며, 논의된 사업들은 예산반영 노력도 함께 병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화 시켜나가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각 일자리사업 지원 기관별로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려는 자구 노력과 함께 실천하는 행동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노인고용 및 일자리지원 사업 예산의 부족입니다.
저희 시니어클럽을 예를 들어 보면, 저희 기관의 예산은 타 사회복지기관처럼 분권예산으로 편성이 되는데, 예산의 90%가 넘게 기관 운영에 따른 필수경비인 인건비와 기관운영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작 필요한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은 10%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신규 사업의 경우는 예산확보가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제주지역의 재정자립도가 어려운 수준이라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여건 속에서 새로운 일자리창출과 제주형 노인일자리사업 마련은 엄두도 낼 수 없고, 기존의 일자리사업 유지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고용 및 노인일자리창출에 대한 도 차원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단기적 실행계획을 해마다 수립해서 이에 따라 예산을 반영시켜 나가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셋째는 제주지역 노인인력의 DB구축입니다. 매번 나오는 제안입니다.
저희 시니어클럽에서도 나름 노인인력에 대한 DB구축을 해오고는 있지만 이 DB는 저희 기관 내에서만 공유가 가능한 것입니다. 노인고용 및 일자리 관련 협력기관과도 노인인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야만 일자리 유형별, 기관별, 사업별 등 노인인력에 적합한 고용과 체계적인 일자리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2004년 이후 노인일자리사업의 양적인 측면에 있어서 증가된 것은 사실이나 증가된 일자리 수만큼 질적인 성장을 가져왔다고는 쉽게 말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제주가 고령사회인만큼 어르신들의 행복지수도 높고 어르신들이 살고 싶은, 특별한 섬으로 거듭 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인 고용과 일자리

양 창 진
(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 연합회회장)

인생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노년층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일자리다. 은퇴 후 짧게는 20년 길게는 40년을 살아야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최고의 복인복지란 말까지 등장했다.

노년기의 일자리는 소득기회 제공 뿐만 아니라 심리, 사회 네크워크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노인들의 사회 참여 확대와 노하우 전수의 측면에서도 그 효과는 탁월할 것이다.

이에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는 전국 조직망을 활용해 양질의 일자리를 어르신들에게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제주도 인구 2011년 583,284명, 남자 292,383 여자 290,901명, 노인인구수 65세 이상 72,684명 , 전체 노인인구의 12.6%가 되어있다.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일반 현황을 알아보면 법적근거 노인복지법 제23조(동법 시행령 17조, 제17조의 4 및 제22조에 있다.

목적으로 지역사회 구직 희망노인의 상담, 알선 등을 통하여 노인의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확대기회에 부응하고 취업설치 년도는 2004, 9월 설립이 되어 전국 취업센터 253개소 275명이 근무하고 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 구직 희망노인의 상담, 알선, 취업 연계조정 및 사후관리
- 지역사회 업체 및 기관(단체) 대상으로 노인 구인처 개발로 취업 알선
-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 교육 실시
- 구직 희망 노인을 자원봉사 등 사회참여 활동과 연계
- 지역사회내 노인 취업정보 네트워크 구축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취업지원센터 전년도 노인취업실적을 보면

60~64세 25명, 65~69세 44명, 70세이상 116명, 계 185명을 취업 시켰다.

직종으로는 농어촌 인력, 경비직, 청소관련, 생산작업, 식당 및 가사 도우미, 현장관리직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대표기관을 보면

- 지방자치단체 : 해당 시에서(노인복지담당과)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실시
- 노인복지회관 :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고령자 취업알선 실시
- 시니어클럽 :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노인일자리 맞춤형 일자리 제공
-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 노인 민간취업 알선을 하고 있다.

◇ 과 제

- 기대 수명

  1980년 65.7세 2000년 76세 2010년 80.8세
- 출산율 : 2001년 1.29명 2007년 1.25명 2011년 1.24명
- 고령화 추계(전국)

  2010년 11% 2026년 20.8% 인구 5명중 1명이 노인(초 고령화 사회 진입)
- 독거노인 급속증가 추세(전체 노인 인구수 대비)

  2000년 16% 2005년 17.8% 2010년 19% 2020년 19.6%
- 노인 자살율 급격한 증가 매년 10.4%

◇ 해결방안

- 기대수명이 늘어남과 동시에 2026년도에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 인구 5명중 1명이 노인인구로 현재 60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능력이 있는 노인은 평생직장이 되도록 보장해 주고 55세부터는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여 재고용
- 현재 65세 이상 대부분 노인들이 노후생활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고(72%) 있을뿐 아니라 핵가족으로 부모부양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직장을 퇴직한 후에도 자신의 적성에 맞추어 취업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를 정부에서 많이 만들어야 할 것이다.
- 노인 구직희망 신청 창구를 읍,면,동에 설치하여 취업희망 노인인력이 필요로 하는 구인업체(단체)에 수시 공급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노인교육의 방향과 과제」에 관한 토론

이 기 성
(숭실대학교 평생교육학과 교수)

□ 노인교육의 재개념화와 관련하여

○ 노인교육의 개념정의와 실체

- 노인학습자, 교육내용, 노인교육전문 교수자의 세 가지 기본 요소 필요
- 우리나라 교육법상 '노인교육'을 정의하거나, 노인교육대상, 노인교육기관을 적시한 법은 없음.

○ '노인교육'에서 '노년교육'으로

- 영유아, 학령아동, 성인, 노인 등 연령별 구분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즉, 노인교육)의 경계를 극복하여, '연령이나 지위, 성별과 무관하게 각자의 관심과 이해에 따라 여러 세대가 모이고 상호작용함으로써 그 속에서 서로간에 정보를 교환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적극적 과정으로서의 교육(즉, 노년교육')으로의 의미 변용 및 개념 확장
- 따라서, 노인교육에 관한 재개념화라기보다 새로운 용어의 차용임.

※ **노인복지법** [시행 2012. 2. 5.] [법률 제11013호]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07.8.3>
3. 노인교실: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47조(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평생교육법** [시행 2011. 7. 25] [법률 제10915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노인교육의 범위에 관하여

○ 노인교육의 범위 준거: 노인을 위한, 노인에 관한, 노인에 의한

- 노인교육은 노인을 위한 교육, 즉 노인 대상의 교육이 노인교육의 개념, 법위 논의의 핵심개념이 되어야 할 것임.

> ※ 다음중 노인교육의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가. 76세 남성 김 아무개씨가 주식투자의 기법을 대학생들에게 가르침.
> 나. 35세 여성 이 아무개씨가 노인의 심리에 관하여 여고생들에게 가르침.
> 다. 45세 남성 박 아무개씨가 세계의 문학을 주제로 노인대학생들에게 가르침.

□ 노인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 노인교육의 수요, 요구조사 필요

- 발표한 자료는 노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에 관한 내용임.
- 노인의 경제활동을 위한 교육이든, 사회활동 또는 개인의 여가활동을 위한 교육이든, 실질적으로 노인이 어떤 종류의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지역별, 연령대별 수요 파악 필요
- 노인의 현황, 노인의 학습자로서의 특성 등이 반영된 프로그램 개발 필요

○ 노인교육 시설 확충 및 전문가 필요

- 노인교육 관련 시설 및 기관, 노인교육 전문가, 현재 개설된 노인교육 관련 프로그램 현황 등에 관한 database 구축 필요

○ 노인교육에 관한 인식의 전환: 평생교육의 일환

- 노인의 희망 평생교육 프로그램 내용이 '건강관리'와 '여가 및 취미'에 편포(72.9%) slide 25쪽
- 연령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희망하지 않는 이유

· 시간이 없음(60-64세 연령의 30%).
· 건강이 안 좋아서(85세 이상 55.6%)
· 평생교육 필요성을 못 느낌.

- 평생교육이 평생 이루어질 수 없다는 한계성을 전제로 노인교육의 재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노인교육은 노인이 되기 전에 체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는 가정이 가능함.

□ 노인교육의 再定向

○ 노인교육의 지향점
- 경제활동
- 사회활동
- 개인의 여가활동 및 기타

○ 지원체제
- 국가 차원의 법·제도 활용
- 수익자부담 원칙 우선

○ 전략적 접근
- 학습에 대한 부정적 인식 불식
- 학습과 나눔(learn to share)
- 지역 특화(localization)
- 점진적 확대
- 기존 인프라의 활용

□ 두 가지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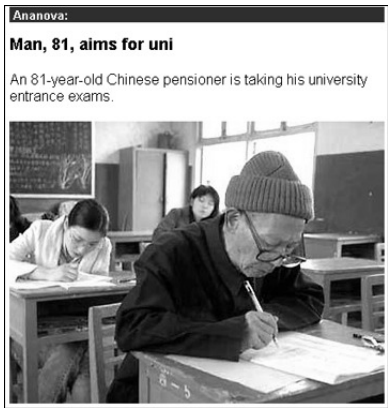
Ananova:

Man, 81, aims for uni

An 81-year-old Chinese pensioner is taking his university entrance exams.

○ 중국, 81세 만학도

올해(2005) 81세의 만학도가 손자·손녀같은 학생들과 함께 입시공부 삼매경에 빠졌다고 해 화제다. 19일 중국 일간 '샤오샹 모닝 포스트(XiaoXiang Morning Post)'지는 중국 후난성(湖南省) 창사의 장산춘씨가 "내 인생의 목표를 이루고 싶다"는 바람을 가지고 대학입시공부에 매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94세(2007)에 의학석사 딴 호주 할머니: Phyllis Turner
- 12세 초등학교 중퇴
- 60여년 만에 애들레이드 대학 입학
- 2002년 인류학 학사과정 우등 졸업
- 90세에 의과대 석사과정 입학

제주특별자치도 민선 5기 고용정책

(제주특별자치도)

Ⅰ 민선5기 일자리창출 정책 총괄

□ 추진 배경

○ 제주지역은 구조적으로 고용창출력이 낮고 일자리 창출에 한계

- 1·3차 산업에 편중된 고용구조(95.6%), 사업체 규모의 영세성(10인 미만 92.8%), 낮은 임금수준(전국 2,487천원, 제주 2,033천원)

○ 한편, 이러한 경제구조와 맞물려 전국 최고 수준의 대학진학률(전국 79.0%, 제주 89.1%)에 따라, 청년들의 임금 등 근로조건 기대치 상승으로 구인·구직 매칭 불균형 심화

□ 추진 전략

○ 민선 5기 제주도정은 제주지역 고용환경의 구조적 문제에 따른 해결방안으로,

- 기존 재정지원에 의한 일자리지원정책이 아닌 향토자원 5대성장산업, 신성장 4대 제조업 등 제주의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을 육성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 성장유망기업 유치, 영어교육도시 등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통한 제주지역 산업구조 다양화에 초점을 맞춰 고용정책을 추진중

<민선 5기 2만개 일자리창출 분야별 추진 계획>

합 계	추 진 분 야					
	향토자원 5대 성장산업	첨단기술 4대제조업	기업 유치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	중소기업 육성연계 일자리창출	미래인재 육성
20,000	4,900	600	1,500	7,200	2,400	3,400

<민선 5기 2만개 일자리창출 연도별 추진 실적>

구 분	목 표(명)	실 적(명)	추진률
2010년	1,170	1,175	100.7%
2011년	3,000	3,354	111.8%
2012.4월 현재	3,170	786	24.8%

Ⅱ 2012 청년 고용활성화 정책 추진-「청년고용 일45정책」

□ 추진 배경

○ 2006년 이후 청년경제활동인구 및 청년취업자수 감소 등 청년층 고용부진이 도내 전체 고용상황 부진을 주도

○ 이에, 2012년도는 청년층 취업자수 증가를 통한 전체 고용 안정을 위하여 [청년고용 일45정책] 추진에 매진

⇒ 청년취업자 4만5천명, 청년고용률 45% 달성 추진

* 2011년 청년 고용동향 : 청년취업자 42천명, 청년고용률 41.5%

□ 「청년고용 일45정책」 추진을 위한 3대 전략

○ 첫째 전략 - 기반 조성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창출 촉진 조례 제정]
  · (배경) 민선 5기 도정이 추진하는 청년고용 시책사업에 대한 법 기반 구축 및 청년고용에 대한 도민 공감대 확산 목적으로 추진
  ⇒ 경기도('11.11.8 제정)에 이어 전국 2번째 조례 제정, '12.5.16 공포
-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의견수렴 기구 구성 - [청년고용포럼]
  · (배경) 관 중심의 고용 네트워크 지양하고, 민간 기구의 자율적인 청년고용 시책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기구 구성
  · (경과) '12.4.16 제주발전연구원 주관으로 일자리창출 분과, 인력양성분과 등 2개 분과로 창립

○ 둘째 전략 - 양질의 일자리 3,170개 창출

합 계	추 진 분 야					
	향토자원 5대 성장산업	첨단기술 4대제조업	기업 유치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	중소기업 육성연계 일자리창출	미래인재 육성
3,170	900	150	330	250	700	840

* 2012. 4월 현재 : 786명 창출(목표 대비 24.8%)

○ 셋째 전략 - 청년 체감형 일자리시책사업 확대 및 발굴

- 청년 취업확대를 위한 「일자리박람회」적기 개최
  · 기존 매년 취업시즌인 9월~10월경 1회 개최에서 2012년도는 상·하반기 2회 개최하여 기업 구인 수요에 대한 대응성 강화
    * 박람회 명칭도 Job Fair로 변경하여 취업카운슬링, 기업설명회 등 취업정보 제공 다양성 추진
  · 상반기는 '12.5.18(금) 기 개최, 하반기는 '12.9.21 개최 예정

- 「청년 선호 기업 구인뱅크 구축」
  · 도내 청년 선호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구인정보 제공을 위하여 제대 총학생회와 공동으로 도내 청년 선호기업에 대한 구인정보(직종 특징, 인재상, 임금, 근로자복지 등)를 구축·제공
    ⇒ 2012년도 추경에 관련 사업비 반영·추진

- 「청년일자리지도(Job Map)」신규 시행
  · 매년 대학 및 특성화고 졸업생중 취업을 하지 못한 실업자를 대상으로 희망 임금·직종, 자격증 등이 기재된 일자리지도를 구축하여 직업상담사가 직업지도, 동행면접 등을 시행
    ⇒ 2012.4월 현재 57명 취업

- 「청년일자리코너」확대·개편(4월부터 시행중)
  · 기존 구인정보 전문 제공 취업시스템에서 구직자가 스스로 구직정보를 제공하는 「청년구직코너」를 추가·지원하는 한편, 스마트폰용 웹으로도 제공하여 "스마트한 일자리 취업시스템"으로 개편
    ⇒ '12. 5월 현재 1,230개 기업 구인정보 제공

- 「고용 우수기업」지원 확대

· 도내 중소기업중 일자리창출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여 2년간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금리우대 등 지원('12부터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개정·시행중)

⇒ 2012년 14개 선정 시행중(2010년 19개, 2011년 16개 선정)

〈지원 내용〉

·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금리우대(2년) : 2.8%→3.5%

· 경영안정자금 지원한도 확대(최고4억→5억원까지)

· 시설투자금 12억→20억, 운전자금 3억→5억원

· 신용보증 수수료 인하 : 0.2%→0.3%

· 인턴사원 지원 확대 : 일반기업60만원→70만원

· 지방세(취득세, 사업소세, 재산세) 면제 및 감면('12.1.1, 도세 감면조례 개정·시행)

-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해외인턴·취업지원 사업」확대

· 기존 제주대학교 주관, 저학년 위주의 해외인턴 사업을 전체 대학 및 졸업예정자(실업자 포함) 위주 선발로 실질적 취업지원 사업으로 추진

⇒ 2011년 34명 지원(250백만원) →2012년 80명 지원(350백만원)

Ⅲ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현황분석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 경과 분석

(단위 : 개, 천원, 명)

연 도	사업 수	지원 예산				지원일자리
		예산 총액	국비	지방비	순수 도비	
2010	51	84,304,671	42,882,857	28,218,817	13,202,997	16,324
2011	50	81,416,663	43,600,168	30,217,431	7,599,064	16,160
2012	50	94,560,983	51,303,101	36,397,427	6,860,455	17,770

○ 2010→2011 비교 : 1개 사업 감소, 28억 감소

- 신규사업 : 청년희망프로젝트, 향토기업 육성 등 2개 사업
- 소멸사업 : 행정인턴, 희망근로, 지방기업고용보조금 등 3개 사업

○ 2011→2012 비교 : 사업 감소 없음, 131억 증가

- 신규사업 : 시각장애인안마사, 농어촌보육여건 개선사업 등 2개 사업
- 소멸사업 : 도민모니터링 지원사업, 향토기업육성 등 2개 사업

재정지원 일자리 수는 '10(16,324명) → '11(16,160명) → '12(17,770명)으로 증가 추세이나, 희망근로·지역공동체 등 일시적 고용안정을 위한 노무제공 사업의 경우 폐지 또는 축소가 되는 반면, 노인·장애인·여성 등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확대 경향

□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 현황

연 도	2010		2011		2012	
구 분	예산 총액 (백만원)	일자리수 (명)	예산총액 (백만원)	일자리수 (명)	예산총액 (백만원)	일자리수 (명)
합 계	**4,400**	**2,335**	**5,335**	**2,752**	**6,603**	**3,302**
노인일자리사업	3,014	2,064	3,888	2,479	4,665	2,987
노인고용촉진장려금지원	346	176	319	173	420	175
노인 돌봄 서비스사업	1,040	95	1,128	100	1,518	140

* 일자리수는 예산에 따른 산정 일자리

○ 2010→2011 비교

- 예 산 : 예산 총액 935백만원 증가(4,400백만원→5,335백만원)
- 일자리 : 예산 증가에 따라 417개 일자리 증가(2,335명→2,752명)

○ 2011→2012 비교

- 예 산 : 예산 총액 1,268백만원 증가(5,335백만원→6,603백만원)
- 일자리 : 예산 증가에 따라 550개 일자리 증가(2,752명→3,302명)